2026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1 인

1. 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6년 11월 4일)

2. 장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믿음관(본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 · 결 사항

○참석 임원

- 이사(7인) : 변도윤, 김종효, 박정호, 이성희, 윤덕규, 이상업, 이석재
- 감사(1인) : 한상숙

○불참 임원

- 감사(1인) : 이승현

4. 심의 · 의결 안건

1) 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3)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 규정에 관한 사항
5) 신한대학교-타지키스탄 후잔트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6개월)체결에 따른 이행지급 (정부 보조금)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신흥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7) 신흥중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8)

5. 보고 안건

1) 법인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및 신분상 조치 보고

간서명	이사 윤덕규	이사 이성희	이사 변도윤

6. 회의 내용

[전차 이사회 회의록(2026학년도 제6차)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하다.]

[의사정족수 성원으로 개회선언 하다.]

[심의 · 의결 사항]

< 제1호 안건 : 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척절차를 이행하다.

(한상숙 감사가 회의실에서 퇴장하다.)

학교법인 신흥학원 우동한 부국장이 설명하다.

신흥학원 김관목 상임이사가 2026년10월31일 소천함에 따라 임원(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임원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또한 이승현, 한상숙 감사에대한 임기가 2026년12월14일 만료될 예정으로 임원(감사)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법인과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적임자에 대해 논의하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이제학님을 추천하다. 또한 법인과 대학을 위한 노고를 인정하며 감사 2인에 대해 각각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논의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한상숙 감사가 회의실에 입장하다.)

(제안이사 김종효, 동의이사 이성희, 재청이사 윤덕규 / 찬성 7인, 반대 0인)

□ 선임 이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임기기간	비고
1	이제학	1963.12.06.	2026.12.12.~2029.12.27.	신임(보선)

□ 선임 감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임기기간	비고
1	이승현	1977.11.12.	2026.12.14.~2028.12.13.	감사(공인회계사)중임

간서명	이사 윤덕규	이사 이성희	이사 변은호

□ 관련 정관

학교법인 신흥학원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8.>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제2호 안건 : >

제2호 안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와 신흥학원 정관 제30조의2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제3호 안건 :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신흥학원 우동한 부국장이 설명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안이사 윤덕규, 동의이사 이석재, 재청이사 박정호 / 찬성 7인, 반대 0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25.]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1. 12.> [전문개정 2009. 6. 25.]18.]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사 윤덕규	이사 이석재	이사 박정호

< 제4호 안건 : 법인 규정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신흥학원 우동한 부국장이 설명하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법인 수익사업체 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안이사 윤덕규, 동의이사 박정호, 재청이사 이성희 / 찬성 7인, 반대 0인)

□ 법인 규정 제정개요

○ 규정명: 수익사업체 관리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가.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입각한 수익사업체 관리 및 감독 강화

나. 규정에 의한 법인 수익사업체 관리 체계 확보

다. 수익사업체 예산·결산, 계약, 감사 등 모니터링 강화 및 통제기능 확립

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일부를 대학에 전출하는 조항을 넣어 법인 책무성 이행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예산·결산 및 경영관리

다. 제3장 회계 및 계약 관리

라. 제4장 감사 및 지도·감독

마. 제5장 대학과의 거래 및 전출금 관리

바. 제6장 보칙

< 제5호 안건 : 신한대학교-타지키스탄 후잔트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6개월)체결에 따른 이행지급(정부 보조금)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신한대학교 임혜원 국제어학센터장이 설명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신한대학교-타지키스탄 후잔트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6개월)체결에 따른 이행지급(정부 보조금)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안이사 이성희, 동의이사 이상업, 재청이사 이석재 / 찬성 7인, 반대 0인)

간서명	이사 윤덕규	이사 이성희	이사 박정호

□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 개요

○ 학당명: 후잔트 세종학당

○ 운영기관명: 신한대학교-타지크 국립상업대학교 후잔드 경제통상대학

○ 주계약명: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

○ 계약내용: 신규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재단과 업무위탁계약

○ 계약사유: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재단과 업무위탁 체결 필요

○ 사업기간: 2026.07.01. ~ 2027.12.31.(6개월)

□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내역

○ 보험계약자: 신한대학교

○ 피보험자: 세종학당재단

○ 가입금액: 금 33,000,000원(금삼천삼백만원/ 지원 금액)

○ 가입기간: 2026.07.01. ~ 2027.08.31.(427일간)

○ 보험료: 금 58,290원(금오만팔천이백구십원/ 예상 보험료), VAT포함

○ 가입사유 및 참고사항

- 세종학당재단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지원금 교부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교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보험기간은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사업 기간 종료 후 8개월까지

< 제6호 안건 : 신흥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신흥중고등학교 박병준 행정실장이 설명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신흥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안이사 이석재, 동의이사 이성희, 재청이사 박정호 / 찬성 7인, 반대 0인)

□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간서명	이사 윤 [illegible]	이사 이 [illegible]	이사 [illegible]

☐ 신흥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별	1차추경액	본예산액	증감	정책사업	1차추경액	본예산액	증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5,799	138,523	257,276	인적자원운용	2,893,155	2,895,906	-2,751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5,138,431	3,909,148	1,229,283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179,278	1,075,220	104,058
기타이전수입	365,979	348,185	17,,794	기본적교육활동	413,858	101,540	312,318
학부모부담수입	553,882	623,552	-69,670	선택적교육활동	462,854	496,500	-33,646
행정활동수입	14,200	14,500	-300	교육활동지원	138,868	68,924	69,944
전년도이월금	9,737	5,000	4,737	학교일반운영	602,531	399,818	202,713
				학교시설확충	787,484	-	787,484
				학교재무활동	-	1,000	-1,000
계	6,478,028	5,038,908	1,439,120	계	6,478,028	5,038,908	1,439,120

< 제7호 안건 : 신흥중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신흥중고등학교 박병준 행정실장이 설명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신흥중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안이사 이석재, 동의이사 이성희, 재청이사 박정호 / 찬성 7인, 반대 0인)

☐ 관련근거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3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 신흥중학교 2026학년도 학교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별	1차추경액	본예산액	증감	정책사업	1차추경액	본예산액	증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8,403	-	358,403	인적자원운용	2,808,993	2,710,994	97,999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4,038,059	3,175,292	862,767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624,716	112,874	511,842
기타이전수입	22,267	1,000	21,267	기본적교육활동	325,143	121,522	203,621
학부모부담수입	384,158	370,386	13,772	선택적교육활동	350,365	276,666	73,699
행정활동수입	8,800	7,800	1,000	교육활동지원	222,984	64,030	158,954
전년도이월금	9,418	10,000	-582	학교일반운영	353,322	278,392	74,930
				학교시설확충	135,582	-	135,582
계	4,821,105	3,564,478	1,256,627	계	4,821,105	3,564,478	1,256,627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제8호 안건 : >

제8호 안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와 신흥학원 정관 제30조의2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보고사항]

1. 법인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및 신분상 조치 보고

[폐회선언]

변도윤 이사장은 2026년11월12일 목요일 11시50분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은 변도윤 이사장, 이석재 이사, 윤덕규 이사가 대표로 서명하다.

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

2026. 11. 12.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변 도 윤
	이 사	김 종 효
	이 사	박 정 호
	이 사	이 성 희
	이 사	윤 덕 규
	이 사	이 상 업
	이 사	이 석 재
	감 사	한 상 숙
	감 사	이 승 현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